

의안번호	
의 퇴 인	진선미의원
회 답 일	2023.06.21.
추 계 번 호	23A287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종사자의 보수가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26조제3항 (실지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발송하여야 함 1. 현장조사목적 2. 현장조사기간과 장소 3. 통계종사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현장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6조 (실지조사 등)	

2. 상세 사유

□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안 제8조의2)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통계종사자의 보수를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 및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관련 비용임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통계작성기관별로 근무하고 있는 통계종사자¹⁾의 보수 내역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처우 및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한 통계종사자의 적정인건비 설정 등이 필요함
- 다만, 개정안은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통계인력이 종사형태별(상용직 및 임시직), 업무 비중별(통계전담·주로 통계업무), 업무분야별(관리·기획 및 분석, 통계자료처리, 현장조사, 연구·교육, 통계지원행정), 근무경력별(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등으로 다양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이들에 대하여 적용될 적정인건비 설정 등을 포함한 처우 및 복무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담당업무 및 종사형태별 등 통계인력

□ 현장조사 등(안 제26조)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재정소요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출입조사서를 발송하는데 따른 비용임
- 이에 대한 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 제26조제3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조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서의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예상건수와 발송형태별 비용(등기, 팩스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1) 통계청의 ‘2022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에 따르면 2022.7.1.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총 431개 기관이며, 통계인력은 총 5,348명임. 이 중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인력은 3,791명이고, 통계업무전담 통계인력 중 상용직(공무원 포함)은 3,112명임

- 다만, 현행 사업체조사에서도 관련 공문의 발송은 조사대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팩스, 등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조사대상이 어떤 형태로 발송을 요청할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관련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정혜승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3750	hs0387@nabo.go.kr

[참고자료] 담당업무 및 종사형태별 등 통계인력(2022년)

(단위: 명,%)

		계	관리·기획 및 분석	통계 자료 처리	현장조사	연구·교육	통계지원 행정
합계		5,348	865	1,208	2,284	96	895
		100.0	16.2	22.6	42.7	1.8	16.7
종사형태별	상용직	4,581	854	739	2,094	87	807
		100.0	18.6	16.1	45.7	1.9	17.6
	임시직	767	11	469	190	9	88
		100.0	1.4	61.1	24.8	1.2	11.5
업무비중별	통계전담	3,791	528	884	2,061	55	263
		100.0	13.9	23.3	54.4	1.5	6.9
	주로통계 업무담당	1,557	337	324	223	41	632
		100.0	21.6	20.8	14.3	2.6	40.6
성별	남성	1,634	447	277	537	33	340
		100.0	27.4	17.0	32.9	2.0	20.8
	여성	3,714	418	931	1,747	63	555
		100.0	11.3	25.1	47.0	1.7	14.9
근무경력별	1년미만	689	117	248	143	15	166
		100.0	17.0	36.0	20.8	2.2	24.1
	1년이상 5년미만	1,547	241	435	594	17	260
		100.0	15.6	28.1	38.4	1.1	16.8
	5년이상	3,112	507	525	1,547	64	469
		100.0	16.3	16.9	49.7	2.1	15.1
교육정도별	고졸이하	849	31	174	564	2	78
		100.0	3.7	20.5	66.4	0.2	9.2
	학사과정 졸업	749	29	149	493	1	77
		100.0	3.9	19.9	65.8	0.1	10.3
	석·박사 과정(수료졸업)	2,908	433	709	1,110	38	618
		100.0	14.9	24.4	38.2	1.3	21.3

자료: 2022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2022.12. 통계청)